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97
2026.10.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니 '할랄 인증 의무화' 선적별 할랄 적합성 검사도 실시

[이주의 초점]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식품·화장품 등에 적용
미인증 제품은 '비할랄 표시' 필수 (4p)

[위클리뉴스]
미 의약품 품목관세 본격 시행 "한국산 특허약 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부적합 수입식품 정밀검사 확대 (7p)

[오피니언: 미 CBP 리스크]
미, 통관 지연 변수 늘었다… 수입자 관리 강화
소프트웨어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로 살펴본 시사점 (12p)

[품목분류 동향]
데이터센터 전력 지키는 무정전전원장치 Split UPS의 품목분류(WCO HSC 회의 논의사항) (25p)

[일본 관세 리포트]
日, 소액 해외 직구도 판매 단계서 소비세 부과 (31p)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김종호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10월 5일(통권 제2197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인니 '할랄 의무화' 수입 건마다 적합성 검사

07 **Weekly News**

오피니언

12 **美 CBP 리스크 - 통관**

미, 통관 지연 변수 늘었다… 수입자 관리 강화

김 태 주 대표관세사 / **권 혁 민** 관세사
KPMG 관세법인

美 CBP 리스크 - 원산지

소프트웨어는 물품의 원산지를 바꿀 수 있을까?

박 현 혁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전문연구원

관세행정실무해설

23 **질의응답사례**

온도 조절이 되는 플라스틱제 강아지 집의 HS Code

품목분류동향

25 **품목분류해설**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지키는 Split UPS

일본 관세 리포트

31 일본, 소액 해외 직구도 판매 단계서 소비세 부과

이주의 초점

인니 '할랄 의무화' 수입 건마다 적합성 검사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화장품 등에 적용

인도네시아가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음료와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인도네시아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할랄 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해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비할랄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관련 기준에 따른 비할랄 표시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수입제품은 통관 전 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할랄 인증 없는 제품은 '비할랄 표시' 필수

할랄 인증은 제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보관 및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공인기관이 확인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할랄 인증 의무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입제품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왔다. 수입 식품·음료와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8일부터 의무화된다. 할랄 인증이 의무인 품목은 식품·음료를 비롯해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유전자변형 제품, 의류·생활소비재와 관련 서비스 등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가기경 수석연구원은 본지에 "할랄 인증이 없으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지 못한다는 오해가 많다. 핵심은 할랄 제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할 경우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인증을 획득해 할랄 인증마크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인도네시아에 수출·유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돼지고기 등 비할랄 원료가 포함된 제품과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신선 과일·채소와 곡류, 신선 견과류 등 일부 식물성 원료 등은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정부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바깥쪽 포장에 훼손·제거되지 않는 방식으로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하며, 벌크 제품은 용기 등에 표시해야 한다. 제조사는 원료 성분표와 생산공정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도 갖춰야 한다. 비할랄 표시 의무는 2026년 7월 23일 시행됐으며, 시행 이전부터 인도네시아에 반입돼 유통·판매되고 있던 제품에는 최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인증 표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면 경고와 제품 회수,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비할랄 표시 로고

구분	비할랄 표시 디자인	적용 대상 및 규격
식품 및 음료		돼지 및 그 파생물이 포함된 제품 돼지 함유 문구와 돼지 그림을 함께 표기
		돼지 외 기타 금지 원료 사용 또는 비할랄 공정 거친 제품 할랄 문구 표기
식품 및 음료 외 제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생물학 제품, 공산품 등 비할랄 문구 표기

출처: 농식품수출정보(Kati)

문제는 법적으로 할랄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사실상 필수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6월 발간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과 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별도 매대에 진열하거나 일부 바이어는 할랄 인증이 없는 한국 제품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발주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는 등 인증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약 2억 8,800만명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무슬림 소비시장 중 하나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할랄 경제 규모는 3,117억달러로 국내 총생산의 19.1% 수준이다.

사실상 필수인 할랄 인증… 선적별 적합성 검사도 시행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뒤 할랄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인증 품목이 적은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다른 하나는 BPJPH가 공인한 할랄 심사기관의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직접 인증받는 방식으로, 인증 품목이 많고 장기적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취득 시에는 원재료·첨가물·제조공정·포장재의 할랄 적합성과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교차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포장용 접착제·코팅재 등 제품과 접촉하는 부자재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재료의 출처와 성분을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8일 BPJPH와 '할랄 제품 인증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할랄 제품 보증을 위한 기술·인력·인프라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의무화에 맞춰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통관 전 선적별로 적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검사 대상에는 할랄 인증 의무 대상 수입제품뿐 아니라 비할랄 표시 대상 제품도 포함된다.** 할랄 인증·등록 정보와 실제 제품의 일치 여부, 제품 종류와 HS Code, 할랄·비할랄 표시, 해외 할랄 인증서 등을 확인한다. 검사를 통과하면 '할랄제품 적합성 확인보고서(LPPH, Laporan Pemastian Produk Halal)'가 발급되며, 한 차례의 선적·수입신고에만 유효해 수입 건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제품 할랄 적합성 검사 주요 확인사항

구분	주요 내용
인증·등록	할랄 인증서 및 할랄 등록 정보와 실제 제품의 일치 여부
물품 정보	제품 종류·HS Code, 수량·생산코드, 생산일자 등과 수입서류의 일치 여부
포장 표시	포장상의 할랄 인증·등록번호와 할랄 또는 비할랄 표시의 적정성
해외 인증	제품 생산국에 있는 할랄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인지, 해당 품목이 BPJPH와 상호인정협정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동물성·가공제품	분리 보관·적재 여부와 운송수단의 비할랄 제품 취급 이력에 따른 오염 위험, 도축육 관련 서류와 실제 물품의 일치 여부

출처: 농식품수출정보(Kati)

이번 검사 도입으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로 수출 시 할랄 인증이나 비할랄 표시를 갖추는 것에 더해 선적 단계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소량 제품을 자주 수출하는 기업은 선적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할랄 인증은 단순히 현지 규제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김다솔 기자 |

미 의약품 품목관세 본격 시행 "한국산 특허약 15%"

2026년 9월 29일 확대 적용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를 9월 29일부터 일반 수입업자로 확대 시행했다. 한국산 일반 특허의약품에는 원칙적으로 232조 관세율 15%가 적용되지만,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와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일부 특수의약품에는 0%가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9월 23일 발표한 연방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 29일 오전 0시 1분 이후 미국 내 소비를 위해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 머크, 일라이릴리 등 17개 대형 제약사는 지난 7월 31일부터 관세가 적용됐으며 9월 29일부터는 이들 기업 외의 수입업자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백악관은 특정 특허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100%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되,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제품에는 1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산 일반 특허의약품에는 기존 미국 통합관세표(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세율을 포함한 총 관세율이 원칙적으로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기존 세율이 15%보다 낮으면 총세율이 15%가 되도록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기존 세율이 이미 15% 이상이면 232조 관세를 추가하지 않는다.

관세 대상에는 완제의약품과 활성의약품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출발물질이 포함된다. 비활성 성분과 부형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네릭의약품(복제약)과 관련 성분에는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BIS는 9월 23일 공고한 HTSUS 수정안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를 제네릭의약품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바이오시밀러도 15%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특수의약품에는 232조 관세율 0%가 적용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9월 24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모든 승인 적응증이 희귀질환 치료용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비롯해 핵의학 의약품,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ADC 등이 대상이다.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Nuclear) 위협에 대응하는 일부 의료제품과 동물용 의약품도 0%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품은 한국 등 BIS가 지정한 적격 관할지역에서 생산돼야 232조 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상시험과 연구개발(R&D), 기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약품과 관련 성분에도 232조 관세율 0%가 적용된다. BIS는 9월 23일 발표한 HTSUS 수정안에서 이를 위한 품목번호 제9903.04.70호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Heading/ subheading	Article description	Rates of duty		
		1		2
		General	Special	
"9903.04.70	Pharmaceutical articles and associated ingredients provided for in subdivision (c) of U.S. note 40 to this subchapter that are solely for use in clinical trials, research and development, or other non-commercial applications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0%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0%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0%".

출처: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연방관보 공고

BIS는 앞으로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0% 적용 대상 국가와 의약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식약처, 부적합 수입식품 정밀검사 5회→최대 20회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생한 위해 수입식품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의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월 30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규제 개선, 영업자 행정 부담 완화 등에 관한 총 6개의 개선사항이 담겼다.

먼저,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기존 5회까지 실시하던 정밀검사를 위해도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확대한다. 또한,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구매대행 영업자의 광고를 통해 안내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기존 5회 → 위해도에 따라 최대 20회 - 인터넷 구매대행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합리적인 규제 개선	- 수입식품 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사유에 '대규모 재해·감염병' 등 추가 - 수입·판매업 등 사무소 설치 요건 확대로 창업보육센터 사무소 설치 가능
행정절차 개선 등 영업자 불편 해소	- 영업등록·영업자 지위승계 시 위생교육 이수증 제출 생략 - 수입·판매업 변경 신고·등록 시 우수수입업소 변경사항 함께 반영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입식품 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도 확대한다. 그동안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려면 폐업·파산 등 제한된 용도 승인 사유로 승인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감염병 등의 사유로도 다른 업체가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사유를 확대한다.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수입·판매업 영업을 등록하거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신청자가 직접 위생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영업자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절차도 간소화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변경 신고·등록만으로 우수수입업소의 관련 사항이 함께 반영된다.

| 김다솔 기자 |

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통관 강화

관세청이 과세 대상인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 용액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입신고 전 건을 대상으로 성분분석을 실시한다.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관세조사도 진행한다.

관세청은 9월 23일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니코틴 함유 용액을 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는 22건(65.43ℓ)이 적발됐다.

8월 18일부터는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이 서류제출 심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수입업체는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비롯해 전자거래 특별계약서, 해외 생산자·유통·수출업체 간 거래관계도, 상대국 수출신고필증, 담배전매기업 생산허가증 등 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되는 유사·무니코틴 용액 제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는 점을 고려해 현지 생산부터 유통·수출에 이르는 거래관계와 허가도 확인한다. 올해 1~9월 20일까지 수입된 유사니코틴 용액의 99.99%(15톤), 무니코틴 용액의 99.7%(315톤)가 중국산이다.

7월 16일부터는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모든 전자담배 용액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신종물질인 유사니코틴을 판별하는 분석기준도 마련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술협의를 거쳐 유사니코틴의 함유 여부와 함량을 함께 확인하는 분석법을 개발해 7월 28일부터 전국 세관에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 용액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담배 관련 세금 포탈뿐만 아니라 수입가격 저가신고와 불법 외화 지급 여부 등 무역거래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CPTPP 가입 경제효과… 10년 후 실질 GDP 0.38%p↑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과 연관 산업에서는 연간 6조원대의 생산파급효과가 예상됐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의 잠정 결과를 9월 28일 이같이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27일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산업계

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힌 바 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 11개 창립 회원국에 영국이 합류하면서 12개국 체제로 확대됐다. 중국과 대만,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등 여러 경제권도 가입을 신청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는 멕시코 시장의 추가 개방 가능성이 CPTPP의 주요 가입 효과로 꼽힌다. CP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멕시코 시장에서 회원국 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멕시코는 비FTA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최고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등을 반영해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GDP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매년 0.38%p씩 상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효 후 10년간 누적되는 효과다. 이번 전망은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계량화한 결과다. 정부는 관세 인하 효과 외에도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로 발생하는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 3,000억원~6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 개방에 따른 부담은 농림수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이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추산한 수산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817억원이다. 세 분야의 감소액을 합하면 연평균 8,523억원이다.

다만 이번 수치는 일정한 가정과 경제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산출한 잠정 전망치다. 정부는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통 공청회에서 공개해 왔지만, 이번에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잠정 분석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먼저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 김다솔 기자 |

미, 통관 지연 변수 늘었다… 수입자 관리 강화

수출기업이 점검해야 할 CBP 통관 리스크

김 태 주 대표관세사 / **권 혁 민** 관세사
KPMG 관세법인

Ⅰ. '세관집행강화' 행정명령으로 수입자(IOR) 무효화 조치

1) IOR 등록정보 요건 강화

2026년 6월 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411 '세관집행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14411[1]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입자(IOR, Importers of Record)**[2] **등록요건 강화, 정보 공개 의무 추가, 외국 수입자의 약식통관 절차 전면 금지 등 조치할 것을 포함**했다.

수입자 등록부를 정비하도록 하면서 ① **비활성 IOR 삭제**, ② **활성 IOR의 규정준수 확인**, ③ **준수이력 기반 위험등급 분류체계 도입**을 지시했다. 실제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3]은 7월 16일 19 CFR 24.5(e)[4]에 근거해 최근 366일간 수입신고 실적이 없는 IOR 계정을 순차적으로 비활성화했다. 이후, CBP는 8월 19일 연방관보 고시(91 FR 53627)를 통해 9월 18일부터 CBP Form 5106[5] 기재정보가 부정확, 불완전한 경우 즉시 IOR 번호를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

1) Executive Order(EO)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2) 수입자(IOR, Importers of Record) :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해 세관에 신고하는자
3)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국경보호 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관리, 농축산물 검역, 국경보안 임무를 통합 수행
4) CBP가 관세·세금 등의 납부를 위해 받은 수표가 결제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규정
5) 수입자 정보 신규 등록 또는 기존 정보 변경 시 사용하는 양식

2) IOR 등록정보의 자율점검 필요성

IOR 무효화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호명, 납세자번호, 우편주소, 실제 소재지, 전화, 이메일 모두가 수입자 본인에게 직접 해당돼야 한다. 통관 관세사는 포워더 등 제3자를 거치지 않은 수입자 본인 명의의 위임장을 보유해야 하며, 허위·부실 기재는 18 U.S.C. §1001 및 허위청구방지법(31 U.S.C. §3729)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오기재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계열사 또는 현지법인 명의로 다수의 IOR 번호를 운용 중인 기업이라면, 그룹 내 모든 IOR 번호 목록과 각각의 최근 수입신고 이력을 관세사를 통해 전수 조회하고, 향후 수입계획이 있으나 최근 실적이 없는 번호는 재활성화에 통상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화물 도착 일정과 무관하게 미리 재활성화 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IOR 번호를 의사결정할 때는 미결 이슈[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6] 상호관세 환급 청구로서, CAPE 3단계[7] 대상]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예: 무역법 122조 위헌판결 전망에 따른 환급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개별 기업의 IOR 보유 현황을 직접 조회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관세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Ⅱ. 외국인 IOR의 연속보증 이슈와 통관 지연 리스크 전망

1) 세관보증제도 개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2,5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세금, 수수료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세관보증(Customs Bond)을 요구한다. 대다수 수입자는 건별로 일회성 보증(STB, Single Transaction Bond)을 설정하는 대신, 연속보증(Continuous Bond)을 이용한다. 연속보증은 통상 1년 단위로 유지되며, 과거 관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6)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7) 최종 정산된 수입신고 건의 IEEPA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단계, CAPE(Count-Ordered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Entries): 수입신고를 처리·재청산하고 관세 환급하는 CBP 절차

2) 외국인 IOR에 대한 연속보증 제한 예고

행정명령 14411 제2조(c)는 이 연속보증금 이용에 관해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 IOR(foreign IOR)'에 대해 정식통관(Formal Entry) 시 원칙적으로 연속보증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CBP가 해당 외국인 IOR이 세수(revenue)가 완전히 보호되고 CBP가 집행하는 법령, 규정, 지침 준수가 보장됨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 IOR'의 정의가 중요하다.** 행정명령 제10조에서는 미국 IOR이 아닌 경우는 모두 외국인 IOR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U.S. IOR	Foreign IOR
개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그 외 개인
법인	미국법에 따라 설립·미국에 소재하고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지배적 실소유자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거나 미국 내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	그 외 법인

저자 정리(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특히 '미국 내 소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① 주된 사업장이 미국 내에 있을 것, ② 실질적 사업활동이 이뤄지는 물리적 공간이 있을 것, ③ 기업 규모에 상응하는 유형자산을 미국 내에 보유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한국 본사가 미국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자회사, 또는 실체가 미약한 현지법인 명의로 IOR 등록을 해 온 경우라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 IOR'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IOR로 분류되면 **연속보증금 대신 매 건마다 일회성 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화물이 도착할 때마다 별도로 보증금 심사,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속보증금 체제에서는 이미 확보된 보증범위 내에서 곧바로 반출이 가능했던 반면, **일회성 보증 체제에서는 매 건 신규 심사가 필요해 절차 소요 시간이 늘어나고, 서류 미비나 심사 지연 시 곧바로 화물이 항구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통관 지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3) 전문가와 함께 IOR 요건 점검

행정명령 제10조가 정의하는 미국 IOR 요건을 충족하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우선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 IOR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입법화될 내용을 기초로 예외 인정 요건을 사전에 갖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속보증에서 일회성 보증으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물류, 통관 일정에 보증 발급 소요기간을 반영해 리드타임(Lead Time)[8]을 여유 있게 확보해 둬야 한다. 미국 현지법인의 미국 IOR 요건은 세무, 법률적 판단이 함께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Ⅲ. 결론: 사전 예방형 통관관리 체계

최근 **미국의 통관집행 강화는 단순히 관세를 정확하게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공급망, 강제노동 연계 여부, 수입자의 실체 및 등록정보까지 통관 단계부터 검증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회수입, 신장위구르강제노동, IOR 등록정보 및 세관보증 요건의 강화**는 우리 기업의 화물이 실제 관세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보류·억류돼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더 이상 **통관 이후의 검증에 대응하는 방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원산지 판정과 공급망 추적, 신장위구르강제노동 관련 실사, IOR 등록정보 등을 **수입 이전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사전 예방형 통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CBP의 데이터 기반 위험선별 및 우회수입 단속이 강화될 경우, 개별 화물의 신고내용뿐만 아니라 거래구조, 과거 수입패턴 등 다양한 정보가 통관 단계에서 검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즉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향후 미국 통관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신속 통관에 그치지 않고, CBP가 제기할 수 있는 의심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즉시 설명할 수 있는 통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8) 작업이 시작돼 최종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전체 소요 시간

소프트웨어는 물품의 원산지를 바꿀 수 있을까?

미 관세정책의 함정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연구: 소프트웨어



박 현 혁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전문연구원

Ⅰ. 들어가며

원산지는 흔히 물품(goods)의 '국적'으로 설명된다.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원산지를 물품의 경제적 국적(Economic Nationality)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WTO「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역시 기본적으로 물품이 어느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면 물리적 형태 없이 개발·전송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도 이러한 의미의 원산지가 있을까? 특혜 원산지에서는 FTA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러나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에서는 이와 별도로 소프트웨어 자체의 원산지를 판단하거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공정이 물품의 원산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 사례들이 확인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정부조달을 위한 'Trade Agreements Act of 1979'(이하 'TAA') 관련 판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을 검토해 소프트웨어 자체의 원산지를 판단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전자제품에 관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에서는 하드웨어의 제조·조립과 소프트웨어의 작성·프로그래밍·탑재 등이 서

로 다른 국가에서 이뤄진 경우 이들 공정이 완제품의 원산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판정례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의 개발국이나 탑재국 중 어느 하나가 일률적으로 완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전자제품은 주요 하드웨어의 제조·조립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물품에 적용되는 과정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이뤄질 수 있어 소프트웨어와 원산지의 관계도 구체적인 생산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CBP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자체의 원산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본 후,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물품에 관한 주요 사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관련 공정이 완제품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소프트웨어와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1.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은?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에서는 적용되는 법령과 목적에 따라 원산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본 글에서 다루는 CBP 판정에서는 둘 이상의 국가가 물품의 생산에 관여한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된다.[1] 실질적 변형이란 제조·가공을 통해 기존 물품이 새로운 명칭(name), 특성(character) 또는 용도(use)를 가진 물품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 판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형식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물품의 특성과 생산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 결합되는 전자제품의 경우 주요 부품이 수행하는 기능, 각 국가에서 이뤄진 제조·조립의 정도와 복잡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조립이 이뤄진 국가가 언제나 원산지가 되는 것도 아니며, 특정 부품의 원산지만으로 완제품의 원산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관련된 물품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실질적 변형의 관점에서 검토된다. 즉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별도의 일률적인 원산지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 공정으로 물품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게 된다.

1)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은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 분석 보고서' 참고

2. 소프트웨어 자체의 원산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프트웨어의 원산지 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스코드(source code)를 작성하며, 소스코드는 컴파일 등의 과정을 통해 오브젝트코드(object code) 등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

정부조달을 위한 TAA 관련 원산지 판정에서는 이러한 변환이 이뤄지는 소프트웨어 빌드(software build) 과정을 실질적 변형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례가 있다.

2025년 결정된 HQ H342822가 이를 잘 보여준다. 판정 대상은 미국 기업 Unifyia의 신원·자격증명 관리 및 인증용 플랫폼 소프트웨어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미국과 인도에서 나눠서 이뤄졌다. 미국에서 기능과 서비스 모델을 설계한 후 인도 개발팀이 전체 소스코드의 약 80%, 미국 개발팀이 약 20%를 작성했다. 이후 소스코드는 미국에 위치한 플랫폼 또는 서버를 통해 빌드됐으며, 이 과정에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소스코드가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오브젝트코드로 컴파일됐다.

단순히 소스코드 작성량만 본다면 인도의 비중이 훨씬 컸으나 CBP는 코드 작성 비중만으로 원산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이뤄진 빌드를 통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소스코드가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오브젝트코드로 전환된 점에 주목했으며, 그 결과 특성은 컴퓨터 코드에서 완성된 소프트웨어로, 용도는 명령어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변화했다고 봐 미국을 원산지로 판단했다.

이 사례는 TAA에 따른 정부조달의 맥락에서 소프트웨어 자체의 비특혜 원산지를 판단한 사례다. 반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결합돼 하나의 완제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판단 대상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라 완제품이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원산지가 그대로 완제품의 원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물품의 원산지

소프트웨어 관련 공정이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초기 사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의 'Data General Corp. v.

United States'다.[2] 이 사건의 대상은 프로그램이 입력되지 않은 PROM(Programmable Read-Only Memory)[3]이었다. 외국에서 생산된 PROM에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입력하자 회로에 특정한 전자적 기능이 부여됐고, 법원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PROM의 특성이 변화했다고 봐 실질적 변형을 인정했다.

이후 CBP 판정에서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공정은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돼 왔다. 다만 이러한 공정이 물품의 원산지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관련 공정으로 발생한 변화, 하드웨어의 제조 및 조립 공정과의 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물품에 탑재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음 두 판정은 서로 다른 생산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공정이 비특혜 원산지 판단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준다.

소프트웨어와 비특혜 원산지

1. 소프트웨어 자체의 원산지 판단

소스코드가 오브젝트코드로 변환되는 '빌드' 과정이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면 해당 국가가 원산지



사례 HQ H342822
미국에서 빌드를 통해 소스코드가 오브젝트코드로 변환돼 미국을 원산지로 인정

2.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물품의 원산지 판단

소프트웨어 관련 공정이 물품에 '실질적 변형'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인 생산과정을 기준으로 판단

실질적 변형 인정



사례 HQ H258960
미국에서 독점 소프트웨어 탑재해 네트워크 장치로 기능

실질적 변형 불인정



사례 HQ H258960
이미 기능하는 장치의 프로그램 교체로 실질적 변형 불인정

정리 및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2) Data General Corp. v. United States, 4 CIT 182 (1982).
3) 프로그램 가능한 읽기 전용 메모리

1. 네트워크 트랜시버(HQ H258960)

HQ H258960은 동일한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더라도 그 이전의 물품 상태에 따라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상 물품인 네트워크 트랜시버의 하드웨어는 중국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됐으며, 미국 기업 AddOn은 미국에서 개발한 독점 소프트웨어를 트랜시버에 다운로드하고 시험했다. CBP에는 수입 당시 트랜시버의 상태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됐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지 않아 네트워크 장치로 기능할 수 없는 'blank' 상태였고, 두 번째는 이미 일반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generic program'이 설치된 상태였다. 두 경우 모두 미국에서 AddOn의 독점 소프트웨어가 적용됐지만, 첫 번째 경우에는 이를 통해 비로소 네트워크 장치로 기능하게 된 반면, 두 번째 경우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교체해 특정 네트워크와 호환되도록 했다.

CBP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 당시 기능하지 않던 트랜시버가 미국에서 개발된 독점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를 통해 비로소 네트워크 장치로 기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수입 당시 트랜시버가 이미 일반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고, 기존 프로그램을 독점 소프트웨어로 교체한 것은 단순히 네트워크 호환성만 변경한 것일 뿐이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2. 네트워크 보안 장치(HQ H348824)

HQ H348824는 주요 하드웨어의 제조와 소프트웨어 관련 공정, 최종 조립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이뤄진 네트워크 보안장치에 관한 판정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말레이시아산 CPU 등 여러 국가의 부품을 SMT(Surface Mount Technology)[4]와 DIP(Dual In-line Package)[5] 공정을 통해 PCB에 실장해 마더보드와 LED 보드를 제조했다. 이후 이들 보드는 대만으로 보내져 전원공급장치, 팬, 커버 등과 함께 최종 제품으로 조립됐다. CBP에는 이러한 생산과정을 전제로, 미국에서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를 대만에서 탑재하는 경우와 대만에서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를 대만에서 탑재하는 경우가 각각 제시됐다.

4) 인쇄회로기판(PCB)의 표면에 표면 실장 부품(SMC)을 부착해 전자 회로를 구성하는 기술
5) 이중 직렬 패키지

첫 번째 경우 CBP는 미국을 원산지로 판단했다. 미국에서 SMT와 DIP 공정을 통해 여러 국가의 개별 부품들이 마더보드로 실질적으로 변형됐고, 이렇게 제조된 마더보드가 완제품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두뇌'이자 '본질'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를 대만에서 탑재하고 최종 조립하는 후속 공정은 이러한 미국산 마더보드를 다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프트웨어와 비특혜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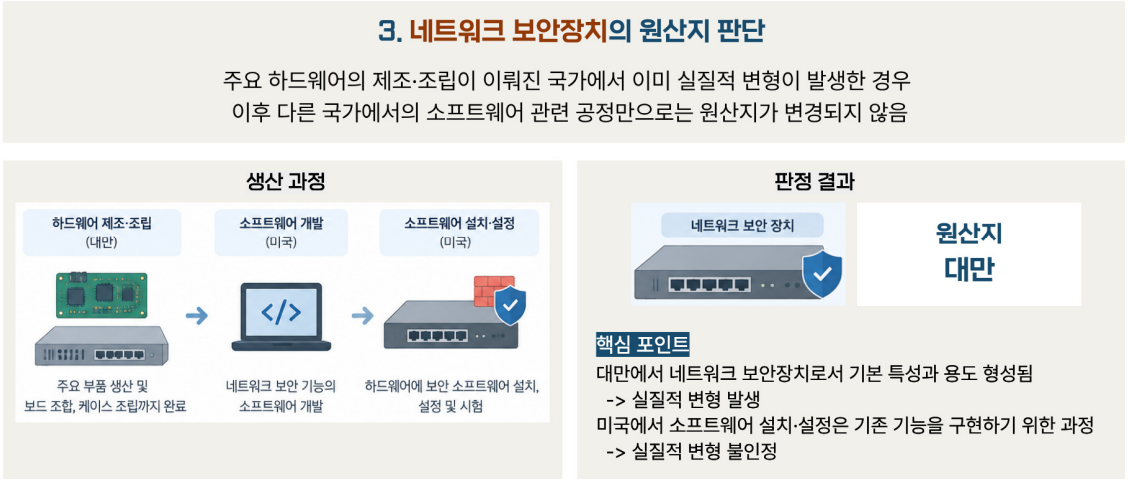

정리 및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반면 두 번째 경우에는 대만을 원산지로 판단했다. CBP는 미국에서 제조된 마더보드가 완제품의 기능에 중요하지만, 대만에서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 역시 장치의 기능에 중요하고, 대만에서 이뤄진 조립을 통해 최종 제품이 완성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미국과 대만 중 어느 한 국가의 공정이 전체 제조과정을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탑재와 완제품 조립이 이뤄진 대만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Ⅳ. CBP 판정에서 확인되는 시사점

앞서 살펴본 판정례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H342822에서 CBP는 소스코드의 작성 비중만으로 소프트웨어의 원산지를 결정하지 않고, 소스코드를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빌드 과정에서 이뤄진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자체의 원산지는 단순히 개발에 참여한 국가나 코드 작성 비중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탑재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원산지가 곧 완제품의 원산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H258960은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더라도 적용 전 물품의 상태와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한 변화에 따라 실질적 변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H348824에서는 주요 하드웨어의 제조,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탑재 및 최종 조립이 여러 국가에 분산된 경우 각 공정이 완제품의 형성과 기능에 미친 영향을 전체 생산과정에서 함께 고려했다.

결국 소프트웨어와 원산지의 관계를 판단할 때는 먼저 소프트웨어 자체가 판단 대상인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완제품이 판단 대상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완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개발국이나 탑재국이라는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프트웨어 관련 공정으로 물품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와 해당 공정이 하드웨어의 제조·조립을 포함한 전체 생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와 관련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왼쪽부터) Origin Case, EU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신청 가이드북, 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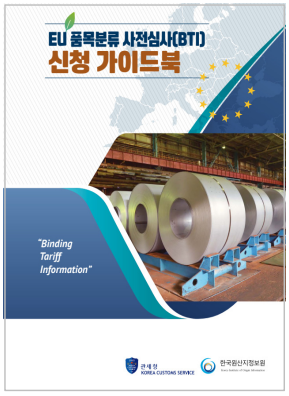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온도 조절이 되는 플라스틱제 강아지 집의 HS Code를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물품이 **단순 플라스틱**으로 된 **강아지 집**이라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봐 **제3926.90-9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도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해당된다면 **제8516.79-9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된다면 **제8543.90-9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도 있으나, 유사 물품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분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품목번호			품명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90		기타
		9000	기타
8516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79		기타

품목번호			품명
		9000	기타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90		부분품
		9000	기타

보세화물

보세창고 인도조건부 거래(BWT) 대상 물품 및 진행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보세창고 인도조건부 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입이란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형태**로, **품목 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범용성 원자재나 선용품 등의 거래에 이용**됩니다.

BWT 방식 수입은 물건이 이미 **국내 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수입절차와 같습니다.** 물품 반입은 수하인이 보세창고로 정해짐으로써 **보세창고로 화물이 반입된 상태에서 구매 주문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다시 송장(Invoice),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이 발행되고 실수요자에 의해 통관 및 인도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BWT 물품으로 보세구역 장치 중 구매자가 결정되면 구매자와의 거래계약에 따라 해당 거래물품에 대한 새로운 B/L 등 무역서류가 발행되고, 관련 서류를 근거로 관할세관(화물담당부서)에 B/L 분할·합병신고로 기존의 수하인을 변경해야 구매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존의 적하목록이 정정됩니다. 이 경우 국내 구매자는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겸 납세의무자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B/L 분할·합병) ① B/L을 분할·합병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B/L 분할·합병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B/L분할·합병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B/L분할·합병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결재를 받은 후 승인사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지키는 Split UPS

기술 발전이 던진 HS 품목분류의 고민
2026년 9월 WCO HS 위원회 현장 경험

김 은 경[1] | 중앙관세분석소

Ⅰ. 들어가며

AI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는 데이터센터다.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서는 순간적인 전력 중단도 서비스 장애나 데이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전이나 전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시간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대형화되고 필요한 전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UPS의 구성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정류기, 인버터, 배터리 등 주요 구성요소가 하나의 장치에 통합된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대용량 설비에서는 다수의 배터리를 본체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고 케이블로 연결하는 Split UPS와 같은 형태가 활용된다.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HS위원회(HSC, Harmonized System Committee)가 제76차부터 제78차 회의까지 검토한 'Split UPS with external battery strings' 사례는 이러한 변화가 HS 품목분류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기술 발전으로 상품의 구성방식이 달라질 때 기존 HS 해석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이 사례의 핵심**이다.

1) 2026년 5월 세계관세기구(WCO) 예비인증교관(Pre-Accredited Expert)으로 선발

Ⅱ. Split UPS의 구성과 작동원리

검토 대상 물품은 500킬로볼트암페어(kVA)급 Split UPS로, UPS host, 160개의 축전지, 4개의 철강제 battery support, 4개의 battery circuit breaker box 및 1개의 battery busbar box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는 별도로 포장되지만 하나의 완전한 UPS 세트로 세관에 제시되며, 수입 후 서로 연결돼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한다.

"기존 UPS와 수행하는 시스템 차원의 목적은 같지만
구성요소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면,
HS에서도 이를 여전히 하나의 UPS로 볼 수 있을까?"

정상 상태에서는 UPS host가 교류(AC) 전력을 직류(DC)로 변환한 후 다시 AC로 변환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주전원 등에 이상이 발생하면 배터리 전력을 인버터를 통해 AC로 변환해 무정전 전력을 공급한다. 통합형 UPS와 Split UPS 구성은 다음과 같다.

통합형 UPS와 Split UPS의 구성 비교

(a) 통합형 UPS(Integrated UPS)



주요 구성요소가 하나의 캐비닛에 통합

(b) Split UPS(with external battery str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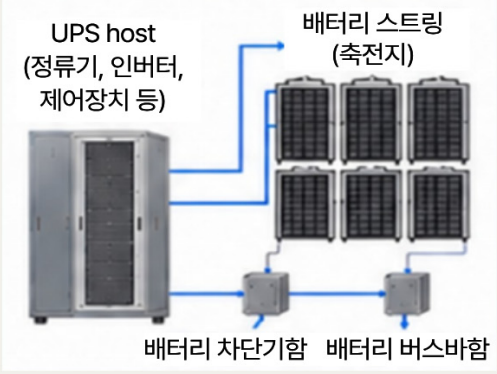

배터리를 외부에 분리해 케이블로 연결

HS 관점에서는 두 기능이 맞닿아 있다. UPS host는 전기를 변환하는 제8504호의 '정지형 변환기(static converter)'와 연결되는 반면, 외부 축전지는 전기에너지를 저장·공급하는 제8507호의 '축전지'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쟁점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시스템을 하나의 기능단위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주요 구성요소와 쟁점 핵심

구성요소	주요 내용	쟁점
UPS host	정류기, 인버터, 제어장치 등	제8504호 해당 여부
축전지(160개)	외부 배터리 스트링	제8507호 또는 제8504호?
Battery Support	배터리 거치대(철강제)	제9403호 또는 제8504호?
Circuit Breaker Box	배터리용 차단기함	UPS의 구성요소 여부
Busbar Box	배터리용 차단기함	UPS의 구성요소 여부

저자 정리(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Ⅲ. 제76~78차 HSC 논의 경과

제76차 HSC에서는 전체 구성요소를 하나의 기능단위로 봐 제8504.40호에 분류하는 방향이 지지를 받았다. 다만 제8504호의 법적 문언은 '정지형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외부 축전지까지 동일한 기능단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에 이견이 제기돼 유보됐다.

제77차 HSC에서는 개별 분류 여부와 함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적용 가능성, battery support를 UPS와 함께 분류할 수 있는지 등이 추가로 검토됐다. 전체를 제8504.40호에 분류하는 방향이 다시 채택됐으나 회원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재차 유보가 제기돼 제78차 HSC에서 최종 재검토됐다.

제78차 HSC는 쟁점을 단계적으로 표결했다. 모든 구성요소의 개별 분류 여부는 31 대 12로 '함께 분류'하는 방향이 선택됐고, battery support도 29 대 13으로 전체 시스템에 포함됐다. 전체를 함께 분류할 경우 적용할 호는 제8504호가 제8507호에 34 대 4로 우세했으며, 통칙 제2호 가목은 15 대 23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HSC는 모든 구성요소를 제16부 주 제4호에 따른 기능단위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호에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분류는 HS 2028에도 적용된다.

HSC 논의 경과 및 주요 결과 사항

회의	주요 논의	결과
제76차 HSC (2025.9.)	기능단위 적용 여부	제8504.40호 → 유보
제77차 HSC (2026.3.)	개별 분류, GIR 2(a), battery support	제8504.40호 → 재유보
제78차 HSC (2026.9.)	기능단위 범위, 제8504호/제8507호, GIR 2(a)	전체 구성요소 제8504.40호

Ⅳ. 품목분류 고찰

1. 무엇을 하나의 '기능단위'로 볼 것인가?

제16부 주 제4호는 여러 개의 개별 구성요소가 분리돼 있거나 케이블 등으로 연결돼 있더라도, 이들이 함께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명확히 한정된 기능(clearly defined function)'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면 전체를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한다.

따라서 Split UPS의 기능을 단순히 '무정전 전원공급'이라고 정하는 것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UPS host의 전력변환, 축전지의 저장·공급, 차단기함의 보호·차단, battery support의 지지처럼 개별 역할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핵심은 이러한 상이한 기능이 단순히 병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결합해 하나의 명확히 한정된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어느 하나의 호가 포괄하는 기능**인지에 있다.

제78차 HSC에서는 이 점을 두고 견해가 갈렸으나, 최종적으로 본건의 구성요소들이 '무정전 전원공급'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능단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회원국도 축전지가 UPS host 내부에 통합돼 있는지와 관계없이 무정전 전원공급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2. 통칙을 적용하면 답이 달라질까?
(통칙 제2호 가목, 통칙 제3호 나목, 제16부 주 제4호)

Split UPS가 제16부 주 제4호에 따른 기능단위라면 통칙 제1호에서 분류가 결정될 수 있다. 별도로 제시되는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통칙 제2호 가목의 미조립·분해 상태 완성품 규정도 검토됐지만, 제78차 HSC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종 법적 근거는 통칙 제1호와 제16부 주 제4호, 그리고 소호 분류를 위한 통칙 제6호였다. 통칙 제3호 나목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른 접근도 논의됐으나 최종 근거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3. 호의 용어와 HS 해설서

제8504호의 호 용어에는 UPS가 직접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제8504호 해설서는 UPS를 정지형 변환기의 예로 설명한다. 다만 이 설명이 외부 축전지, battery support, circuit breaker box 등이 분리된 Split UPS 전체를 직접 포괄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제78차 HSC에서도 개별 분류를 지지한 견해는 해설서로 호의 법적 문언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반면 전체 분류를 지지한 견해는 해설서의 UPS 설명을 제8504호와 UPS의 기술적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보면서, 외부 구성요소까지 함께 분류할 수 있는지는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 요건을 통해 판단했다. 즉 “해설서에 UPS가 있으므로 전체가 곧바로 제8504호”라는 논리라기보다, 해설서와 법적 주를 각각의 역할에 맞게 함께 검토한 사례로 볼 수 있다.

Ⅴ. 기술은 변했는데 기능은 그대로라면?

전통적인 UPS와 Split UPS는 주요 구성요소와 기본 작동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성방식(configuration)은 달라졌다. 대용량 설비에서는 배터리를 하나의 cabinet 안에 두기보다 외부 battery strings로 설치할 수 있다.

제78차 HSC의 결정은 본 건의 구체적인 구성과 작동관계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분리 자체가 기능단위의 성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모든 모듈형·분리형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하나의 기능단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구성요소가 실제로 하나의 명확

히 한정된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돼야 한다.

Ⅵ. 맺음말

Split UPS의 품목분류는 언뜻 보면 제8504호의 정지형 변환기와 제8507호의 축전지 사이의 기술적인 분류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칙 제1호와 제16부 주 제4호의 관계, 기능단위의 범위, 통칙 제2호 가목의 적용 가능성, 호의 용어와 HS 해설서의 관계 등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에 관한 질문을 함께 담고 있다.

제78차 HSC는 Split UPS의 모든 구성요소를 하나의 기능단위로 봐 제8504.40호에 분류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보다 큰 의미는 기술 발전으로 하나의 기기 안에 있던 구성요소가 외부로 분리되더라도, 물리적 형태만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기능적 관계와 이를 HS의 법적 문언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기술이 변화하더라도 HS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국제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해석과정은 계속 필요하다.[2)]

“기술이 변해도 HS가 지향하는 가치는 같다.
변화하는 상품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참고자료
- World Customs Organization, HSC Working Document NC3534Ea, Re-examin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a product called “split UPS with external battery strings” (Request by the United States).
- World Customs Organization, Annex H/2 to Doc. NC3534Ea, Decisions of the Harmonized System Committee, HSC/78/Sept. 2026.
- World Customs Organization, Harmonized System Explanatory Notes, heading 85.04.

일본, 소액 해외 직구도 판매 단계서 소비세 부과

2028년 과세체계 개편… 해외 사업자·지정 플랫폼이 납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일본의 전체 수입허가 건수 중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소액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이르렀다. 기존 소액면세제도가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일본은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해외 통신판매 상품의 소비세 과세 개편을 반영했다. 이 법률은 2026년 3월 31일 성립·공포됐으며, 관련 제도는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소비자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과세가격 1만엔 이하인 소액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소비세 등의 면세는 유지하되, 해외사업자[1]가 판매단계에서 소비세를 신고 납부하게 하는 것이 것이 핵심이다.

판매가격 1만 엔 이하 상품도 국내 거래로 간주해 소비세 부과

개정 소비세법은 해외 사업자가 일본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고 해외에서 일본으로 배송하는 상품 가운데 자산 하나당 세전 판매가격이 1만엔 이하인 상품을 '특정소액자산'으로 정의한다.

'특정소액자산의 양도'는 판매 당시 상품이 해외에 있더라도 일본 국내에서 거래된 것으로 간주해 판매단계에서 소비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해외 사업자가 판매단계에서 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2]

해외 사업자가 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본 국세청장이 지정한 '제2종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받는 경우 플랫폼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플랫폼이 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3]

---

1) 일본 밖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올리브영 글로벌몰을 운영하는 CJ올리브영이나, 라쿠텐·큐텐 등에 입점해 일본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발송하는 개인 판매자 등이 해당한다.
2) 배송비 등 부대비용이 상품가격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이를 포함해 판단한다.

반면 지정되지 않은 플랫폼이나 자체 쇼핑몰(자사몰)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해외 판매자가 직접 납세 주체가 된다. 다만 기준기간 등의 일본 내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일 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본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면세사업자가 돼 소비세 신고·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액화물 과세 개정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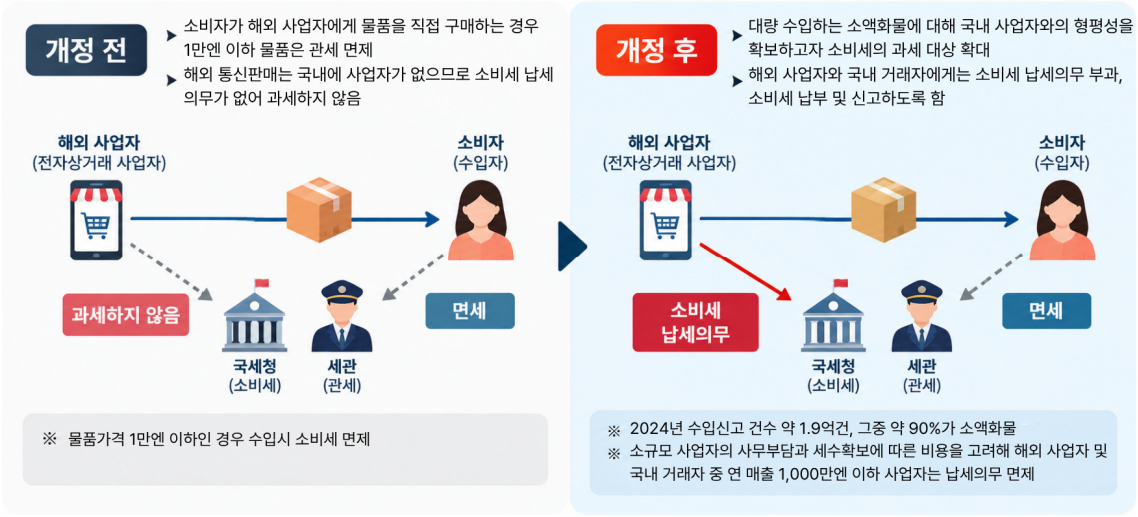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2026), '소비세법 등의 개정'을 바탕으로 정리(번역 및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이중과세 막는 '특정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

일본의 소비자가 각각 1만엔 이하인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해 수입통관과정에서 과세가격합계가 1만엔을 넘으면 관세와 소비세가 부과한다. 이 경우 해외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소비세를, 소비자가 다시 부담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등록사업자는 송장이나 전자기록에 등록번호와 해당 상품이 특정소액자산 양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재해 수입자나 통관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가 수입신고서 등에 기재되면 수입통관과정에서 소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3) 제2종 플랫폼사업자 : 아마존, 라쿠텐과 같이 해외사업자와 일본 소비자간 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결제를 대행하는 플랫폼 사업자 중, 과세기간 해당 거래규모가 50억엔을 초과해 일본 국세청장이 지정·공시한 사업자. 거래규모에 따라 실제 지정 사업자에 해당여부는 향후 일본 국세청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등록에 따른 면제는 '소비세'에만 적용되며, 관세 면제 여부는 화물의 과세가격과 관세법상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또한 등록정보가 통관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일본 소비자가 통관과정에서 소비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특정소액자산 판매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과세사업자여야 한다. 등록한 후에는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여도 면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일본 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과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개인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품의 과세가격을 해외 소매가격의 60%로 산정한다. 해외 소매가격이 약 1만 6,666엔인 상품도 과세가격은 약 1만엔으로 계산돼 관세와 소비세의 소액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일본정부는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이 같은 특례의 폐지를 반영했다. 2028년 4월 1일부터는 개인용 수입물품에도 일반적인 관세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소액면세 적용범위가 현재보다 줄어들어 일본 소비자가 체감하는 해외 직구 상품의 구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일본의 소액화물 해외직구 소비세 과세방식 개편 전·후

구분	현행	개정 후(2028년 4월 1일부터)
개인용 수입물품 과세가격 기준	해외 소매가격의 60%로 산정	60% 산정 특례 폐지
소비세	국외거래로 취급해 과세하지 않음	일본 국내거래로 간주해 과세 • 납세자 : 해외 판매자(또는 지정 플랫폼)
관세	면제	변동 없음

자료: 일본 재무성(2026), '소비세법 등의 개정'을 바탕으로 재구성

판매경로별 세무·가격 체계 점검해야

한국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의 대일본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2025년 7,888억원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26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한 4,840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4)]

4) 온라인 면세점 해외 직접판매액을 제외한 수치

이처럼 대일본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판매자들도 일본의 과세방식 개편에 대비해야 한다. 먼저 이용 중인 판매경로가 일본 국세청이 지정한 플랫폼인지, 혹은 자체 쇼핑몰이나 미지정 플랫폼인지 확인한다. 판매경로에 따라 납세 주체와 대금 정산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정 플랫폼 이용 판매자	플랫폼의 소비세 반영 방식 및 대금 정산 구조 확인
자체 쇼핑몰 및 미지정 플랫폼 이용 판매자	과세·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점검 및 '특정소액자산 판매사업자' 등록 필요성 검토

이와 함께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용 수입물품에 적용되던 60% 과세가격 특례가 폐지되면 일본 소비자의 수입단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가격과 배송비 표시 방식을 다시 살펴야 한다. 또 필요한 통관정보가 일본 수입자와 통관업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 강보람 기자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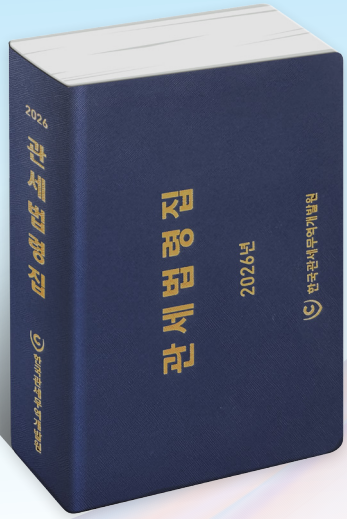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